

삼육대학교 부설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규정

규정 · 소관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 현행 규정

개정 2023. 4. 3. · 시행 2023. 3. 1. (현행 판)

공식 원본 law.syu.ac.kr · <https://suleap.syu.my/r/393> · 내려받은 때 2026. 10. 21. 오전 11:32:45 · 이후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시행 여부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기관은 「삼육대학교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Global Institute for Gifted in Arts)」이라 칭한다.(이하 '영재교육원'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영재교육진흥법 제8조 및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하여 예술(음악)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초.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발굴하여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뛰어난 예술적 소양을 갖춘 전인적 인재로 키워내고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영재교육원은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815 삼육대학교 (이하 '본교')에 둔다.

제4조(운영)

영재교육원은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초.중.고등학교 예술(음악)영재 발굴 및 교육
2. 예술영재 교육 관련 교재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연구 및 각종 활동
3. 기타 영재교육원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

제2장 조직

제5조(조직)

본 영재교육원은 원장의 책임 하에 운영되며 위원회 및 부조직을 둘 수 있다. ① 영재교육원 안에는 운영위원회, 영재선정심사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을 둔다. ② 영재교육원 부조직으로는 교육연구부, 대외국제부, 교육사업부, 행정실을 둘 수 있다.

제6조(원장)

원장은 예술(음악)분야 본교 전임교원으로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7조(부원장)

① 부원장은 원장이 위촉하며, 원장의 업무를 보조하고 행정실 및 교육연구부를 총괄한다. ② 부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직원)

① 영재교육원의 운영을 위하여 행정인력을 둘 수 있다. ② 기타 영재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임시직원을 둘 수 있다.

제3장 위원회

제9조(운영위원회)

① 영재교육원의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부총장, 영재교육원의 원장, 부원장, 삼육대학교 기획처장, 사무처장, 산학협력단장, 평생교육원장, 재무처장, 외부전문가로 한다. <개정 2023-04-03>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부총장이 한다. <개정 2023-04-03>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영재교육원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영재교육원의 예산 및 결산에 의한 사항

3. 그 밖의 영재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0조(영재선정심사위원회)

①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6조 및 17조에 따라 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선정심사 위원회는 학생의 선발,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제11조(자문위원회)

① 영재교육원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과 영재선발과 교육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예술(음악) 및 영재교육의 외부 전문가 중 에서 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4장 강사 및 연구원

제12조(강사확보)

영재교육원은 예술영재교육영역의 교과별, 전공별로 영재교육을 담당 할 강사를 과목 별 1인 이상을 확보한다. 강사는 배정된 수업을 진행하고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를 한다.

제13조(강사임용기준)

① 강사의 임용은 영재교육법시행령 제26조 1항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 해당 교과목의 수업과 학생지도를 담당한다. ② 강사의 수당 및 복무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14조(교원겸임)

① 영재교육원의 수업을 위하여 타 대학의 강사 및 타 교육기관 소속 교원이 출강할 수 있다. ② 영재교육원장은 담당교원의 겸임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임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전임연구원)

① 영재교육원 교원 중, 각 주요과목을 담당하는 자를 전임연구원 으로 선발한다. ② 전임연구원은 영재교육 프로그램 수립 및 교재개발, 교수진 세미나 등을 담당한다. ③ 전임연구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교육과정 운영

제16조(교육과정)

① 영재교육원에는 예비영재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 및 특별교육과정을 둔다.

제17조(정원)

① 영재교육원의 학생정원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결원 발생 시에는 선발전형 성적 차점자 순으로 충원할 수 있으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모집을 할 수 있다.

제18조(교육연한)

영재교육원의 교육연한은 매년 해당 분야별로 1년 과정으로 한다. 예술영재교육의 특수성과 연속성에 따라 1년 수료 이후 재 지원하여 교육받을 수 있다.

제6장 지원 및 선발

제19조(지원자격)

① 영재교육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초, 중, 고 재학생 또는 해당 연령 청소년 중 예술(음악) 분야에 뛰어난 재능과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② 초·중·고재학생이나 해당 학령이 아닌 자도 조기선발이나 특별선발에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선발방법)

① 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재학중인 학교의 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교육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제21조(선발기준)

① 영재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검사(실기고사)·면접 또는 관찰의 방법에 따라 특정교과 또는 예술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뛰어난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뛰어난 재능과 잠재력이 있으나 사회·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발현되지 못한 경우,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영재교육원의 교육영역 및 목적에 적합하고, 교육 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영재교육 대상자로 선발될 수 있다.

제7장 입학 및 교육, 수료

제22조(입학)

① 입학시기는 선정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② 영재교육원에 입학하려는 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 및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표창)

교과활동, 교과 외 활동 분야의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는 지도(담당)교사의 추천에 의하여 영재교육원장 혹은 본교 총장 명의의 표창이나 포상을 할 수 있다.

제24조(제적)

영재교육원은 출석미달, 성적부진, 태도불량 등 학생의 자질이 영재교육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휴학이나 자퇴를 불허하며 제적으로 처리하며, 그 결과를 소속 학교와 학부모에게 통보한다.

제25조(퇴학)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 서식의 자퇴원을 영재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수료)

수료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함에는 교육과정 이수에 필요한 시수의 80%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소속 학교장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출석으로 인정한다.

1. 교육청 및 권위 있는 교육기관이 주최·주관하는 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진단서 제출)

다. 해외나 국외 권위 있는 대회나 연주에 영재교육원장 및 담당강사의 추천으로 참가하는 경우

③ 영재교육원장은 수료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27조(학교생활기록부관리)

교육원의 원장은 영재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준하는 자료를 작성 관리하고, 이를 수료 후에 소속 학교의 장에게 송부한다.

제8장 수업료 및 장학금

제28조(수업료)

① 전형료(사전선발), 수업료, 실습비(캠프 및 연주회) 등 기타 교육경비에 관한 책정, 징수 및 집행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정한다. ② 전형료, 수업료, 교재비, 실습비 등은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장학금)

영재교육원장은 선발심의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영재교육원의 예산 안에서 장학금을 수여하거나 수업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장 재정

제30조(사업)

① 원장은 매년 학생선발, 예산편성, 결산사항 등 영재교육원 운영의 중요 사항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으며, 관리, 집행하여 사업실적과 결산내역을 총장에게 보고한다. ② 영재교육원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재정)

영재교육원의 재정은 본교 대학의 교비,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외부 기금(재단 및 단체의 지원금), 용익수입 및 기타 수익금등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32조(수당 및 보수)

① 영재교육원의 사업 목적 달성 및 제반 운영 활동에 기여한 교육, 연구, 관리 및 지원업무 인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영재선정심의위원(임원) 및 강사의 수당, 전임연구원 수당, 직원의 임금, 상여금, 특별수당, 임시직의 수당은 매 회계년 초에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33조(회계)

영재교육원의 회계는 본교 교비 회계연도를 따르며, 다만 국고 등 외부 지원비의 회계연도가 다를 경우 해당 지침을 우선하여 따른다. 또한 대학의 세칙 및 국가 지원기관의 지원규정 및 기타 회계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0장 기타

제34조(시행세칙 및 개정)

이 규정에 따라 영재교육원을 운용할 때 부가적으로 필요한 세칙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 영재교육원 규정의 개정은 위원장의 발의에 의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된다.

제35조(규정준용)

이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영재교육진흥법 및 시행령, 대학 규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9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